

# 『자발적협약(VA)』에 대해

한국제지(주) 온산공장이 최근 환경부와 첫 자발적협약(VA) 대상업체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입게 됐다.

환경부는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제지가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를 정밀 검토한 결과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자발적협약 대상업체 1호로 선정했다.

자발적협약이란 기업이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 이행할 경우 정부가 연료규제완화, 지도·단속의 완화, 기술지원 실시, 자금지원 및 홍보,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제지는 연료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발적협약 업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는 물론 장관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자발적협약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 유도,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 및 연료의 선택권 확보와 향후 강화될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준비, 방지시설의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자발적협약**은 98년 5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자발적협약(VA)” 제도 도입을 의결했다. 이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유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99년 1월 산자부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규정 신설 및 협약체결을 추진해 올 6월 현재 105개 사업장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참여기업에 대해 산자부에서는 환경부에 환경부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환경부는 올초부터 VA 참여기업에 대한 환경부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했다.

내용은 동 협약참여기업 중 대기오염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방지시설 설치기간 동안 0.5% 사용의무→1.0% 저황유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 산자부 자발적협약 운영규정 개정(99년 11

월) 및 환경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고시 개정(99년 12월)-

이에 올 5월 한국제지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 환경부문 연료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를 신청하자 환경부는 대기오염저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자발적협약 내용에 대기 오염저감분야의 협약내용 추가 및 환경부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VA업체가 별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와 동 업체와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 등을 협의 후, 동 대기오염저감분야 협약내용을 산자부에 통보, 자발적협약을 개정 조치하게 됨)

**이번에 신청한 한국제지**는 대기1종, 수질1종업체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으로 보일러 4기에 대해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동 시설 설치기간 동안 연료규제 완

화 요청을 했다. 현재는 전기집진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SO<sub>2</sub> 먼지 등의 처리를 위한 "일체형 습식 배연탈황 시설" 설치, 지난 3월 방지사설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기존 전기집진시설 등은 비상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대기오염 방지사설 설치계획>

배출시설 현황	방지사설 설치계획	예상 배출농도			배출 허용기준
		항목	처리전	처리후 (처리효율,%)	
보일러 4기 (50,40,35,5톤/시)	배연탈황시설 (2,043 Sm <sup>3</sup> /분)	SO <sub>2</sub>	1,844 ppm	50 ppm (97.3%)	270 ppm
		먼지	340 mg/Sm <sup>3</sup>	10mg/Sm <sup>3</sup> (97.1%)	40mg/Sm <sup>3</sup>

주) 예상배출농도는 황합량 4% 고탄유 사용시 SO<sub>2</sub> 먼지의 설계 보증치임  
 자발적협약 체결업체에는 대기오염방지사설 설치 자금이 지원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추천)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30억원 이내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5%이다.

관련규정을 보면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6조제5항 및 제6항) 자발적협약에 참여하는 자가 방지사설의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 등에 관하여 정부와 자발적협약을체결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방지사설 설치기간동안 황합유량 1.0% 증유 사용이 가능하다.(제6조제5항). 다만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제시된 환경부문 인센티브의 부여를 중단하고, 1월 이내에 황합유량 0.5% 이하 증유를 사용토록 한다.(제6조제6항)

**대기오염저감 분야 협약체결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에너지절약의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 기여-협약체결업체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 제고 및 연료의 선택권 확보(고탄유 사용가능), 향후 강화될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대비, 방지사설의 기술개발 유도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 검토 및 추진절차

<표1>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 검토 및 추진절차

추진절차	검토 및 추진내용	비고
자발적협약 이행계획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 제출 -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는 환경부에 검토 의뢰	- 에너지관리공단 접수 ○ 에너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 별도로 제출 가능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 검토·평가 및 목표 협의	-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의 적정·타당성 검토 ○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 평가 - "자율환경관리평가위원회"(위원장: 대기보전국장)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검토·평가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별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협약대상자 확정	- 환경부 ○ 정부(환경부)와 업체간 목표 협의·확정	위의 절차는 같은
협약 체결	- 정부 ○ 협약서에 서명 - 정부(환경부, 산자부), 업체 대표 ※ 대기오염물질 저감분야의 협약 내용은 환경부경관이 겸함	협약문 작성 협약내용 환경 - 환경부 - 산자부
이행 및 지원	- 환경부 ○ 연료규제 완화등	이하 절차는 같은
실적 보고	- 환경부 ○ 중간, 최종보고등	
최종 평가	- 환경부 ○ 시설 설치후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이행여부 확인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검토·평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저감계획서에 제시된 방지사설 설치계획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 등의 적정 타당성에 대하여 "자율환경관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평가가 이뤄진다.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현지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신청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으로서 한 항목이라도 "불량"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협약체결대상업체로 선정된다. 이번 한국제지는 평균 81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율환경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구 성

- 위원장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 위원 : 환경부(대기정책과장,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연구원(대기공학과장), 환경관리공단(기술진흥처장)

— 역 할

- 실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오염물질 개선목표설정의 적정 타당성의 검토 평가  
방지사설 설치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환경관련 개선 및 투자실적 평가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여부등  
자율환경관리 이행실태 평가등

환경부문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발적협약 업체외에도 “자율지침서”와 같이 방지사설 설치기간동안 연료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으니 희망업체는 직접 환경부 대기정책과 (02)504-9247, 500-4279~81)로 문의 바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지침서**

1. 목적

- 규제중심의 일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체제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기업 스스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간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2. 근거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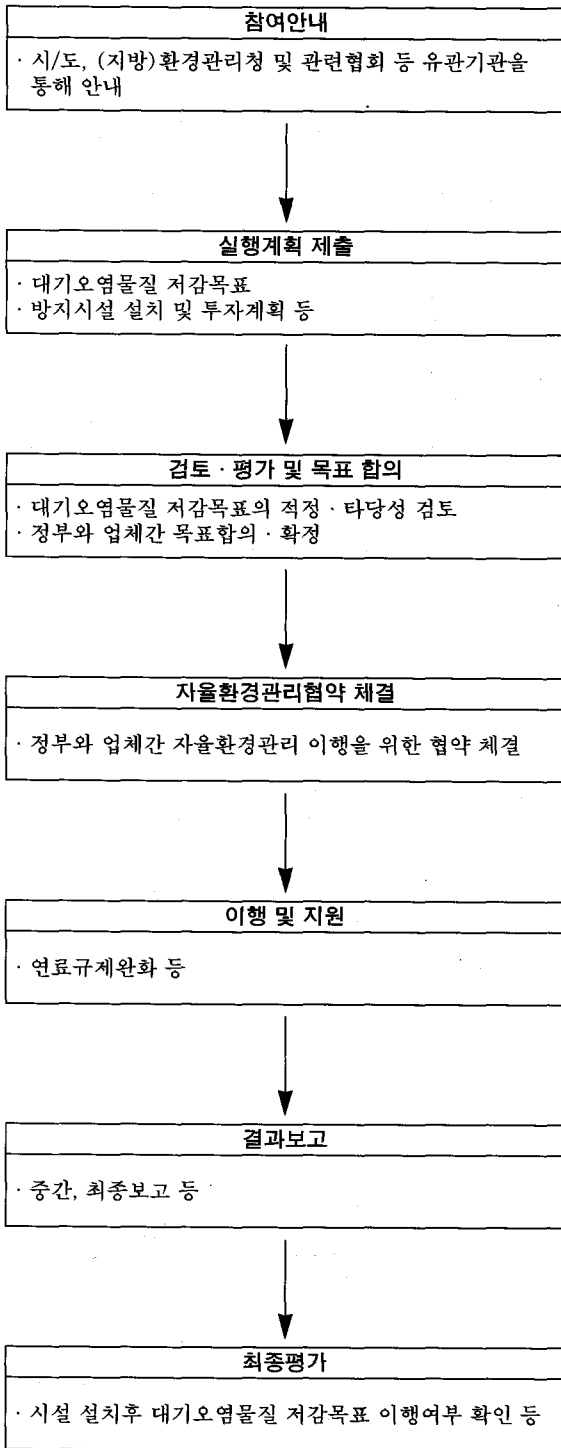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99-100호)제6조제4항
- 1999년 7월 1일부터 황함유량 0.5% 이하의 중유 공급 사용지역 안에서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중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사설(이하 “방지사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방지사설의 설치계획등을 수립하여 그 계획의 이행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지사설의 설치기간동안 방지사설이 설치되는 당해 연료용 유류 사용시설에 황함유량 1.0% 이하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량 1.0% 이하 중유 공급 사용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협약체결 신청

- 신청대상지역 : 대전, 광주, 오산, 용인, 이천, 원주, 청주, 서산, 아산, 천안, 전주, 익산, 군산, 나주, 구미, 김천, 경주, 포항,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양산시, 화성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29개 시 군)
- 신청대상자 : 상가지역의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중 황함유량 0.5% 이하 중유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황산화물 및 먼지의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지사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방지사설 설치 계획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서류(이하 “실행계획서”라 한다)

4. 자율환경관리 추진체계

가. 단계별 추진절차



나. 세부 추진절차

1) 실행계획 제출

가) 자율환경관리협약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실행계획서를 제출

나) 실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방지시설 설치 및 그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일반현황

- 사업활동 개요(회사연혁, 환경관리조직)
- 제조공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현황
  - 제조공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 및 투자현황

② 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방지시설 설치계획 관련 자료
  - 방지시설 설치의 구체적 일정
  -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내부 검토결과
  - 방지시설 설치시 손익분석과 설치비 조달계획
  - 방지시설 설치전 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량
  - 방지시설 설치전 후의 사용연료 및 사용량
  - 방지시설 도면
- 오염물질 적정처리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전 및 유지관리계획
  -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계획

③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건의 및 지원요청 사항

2) 검토 평가 및 목표 합의

가) 검토 평가

-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서에서 제시된 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등의 적정 타당성에 대하여 "자율환경관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평가

- ※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현지조사 실시
- [붙임 1] 신청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총점의 평균이 60점이상으로서 한 항목이라도 "불량"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협약체결대상업체로 선정

<자율환경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구성
- 위원장 :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 위원 : 환경부(대기정책과장,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연구원(대기공학과장), 환경관리공단(기술진흥처장)

- 역할
- 실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오염물질 개선목표설정의 적정 타당성의 검토 평가
- 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환경관련 개선 및 투자실적 평가
-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 자율환경관리 이행실태 평가 등

나) 목표협의

-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배출량 저감의지를 확인
- 협의내용
  - 저감대상 오염물질, 저감목표등
  - 평가, 보고절차, 모니터링등에 관한 사항

3) 자율환경관리협약서 체결

- 협의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의 실천을 위하여 정부(환경부)와 신청업체간 자율환경관리협약서 체결(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 협약기간(방지시설 설치기간), 저감대상 오염물질 및 저감목표(처리효율, 배출농도등)
  - 정부와 협약체결업체의 역할, 협약 미이행시 조치 사항
  - 보고, 모니터링, 평가등에 관한 사항

4) 이행 및 지원

- 협약체결업체는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 협약체결업체에 대하여는 협약서에 정해진 방지시설 설치기간까지 황합유량 1.0% 이하 중유 사용
- ※ 동 사항을 협약 체결업체 및 지도점검기관등에 통보
- 협약체결업체중 성실히 협약을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지도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의 표창등 강구

5) 결과보고

- 협약의 이행상태를 확인 평가
- 분기 1회 이행상황 평가 및 점검
  - 자료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 결과보고는 방지시설 설치일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필요시 지도점검기관에서 시설 설치사항등에 대한 조사 실시
- 평가결과 방지시설 설치기간내 시설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0.5% 저황유를 사용토록 조치
- 협약체결업체 및 지도점검기관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신청시 감점, 지도점검 강화방안등 강구

6) 최종평가

- 실행계획 대비 이행실적 비교·분석
  - 시설투자내역,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등

-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사례는 발표 및 홍보 실시

**다. 참여주체별 역할**

**1)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저감목표 협의 및 협약체결
-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조치 강구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표설정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상황등 검토 평가
- 협약체결업체의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 등

**2)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 자율환경관리협약 시행에 따른 행정적 협조(필요시)
  - 보고내용 현지확인 및 추진상황 실태보고
  - 협약체결업체의 이행실태 확인 등을 위한 모니터링 등

**3) 협약체결업체**

- 자율환경관리협약 추진에 적극 참여
  - 협약내용 준수, 보고등 자율환경관리협약과 관련된 사항 성실 이행

**5.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지원**

**가. 연료사용규제 완화**

- 근거규정 :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 1999-100호)제6조제4항
- 완화내용 : 협약서에 정해진 방지시설 설치기간까지 황함유량 1.0%이하 중유 사용가능
- ※ 관할 허가기관 및 지도점검기관에 동 내용 통보

**나. 지도 단속의 완화**

- 근거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

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403호)

- 규제내용 : 배출규모에 따라서 년 1~4회 정기점검 및 민원 등 사유발생시 수시점검
- 지원내용 : 우수한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지도점검 면제방안 강구. 단, 민원 발생시는 예외
- ※ 비고 : 환경친화기업은 지도 점검 면제

**다. 기술지원 실시(업체 요청시)**

- 근거규정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을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경기술지원업무규정(환경관리공단)
- 지원기관 : 환경관리공단
- 지원시기 : 협약체결업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지원분야 : 대기분야

**라. 자금지원 및 홍보**

-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등 환경관련 각종 시설자금 융자지원
-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환경관리공단에서 '99년도에 년리 7%(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20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
-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최종결과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가점부여
- 우수사례 발굴 및 언론, 잡지,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등

**마. 업계 애로사항 해소**

- 협약체결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붙임 1]

## 신청업체 평가기준

항목 총점	세부확인내용	배점
		100
가. 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 설치의 구체적 일정</li> <li>○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내부 검토결과</li> <li>○ 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조직(환경전담부서)</li> </ul>	25
나. 대기오염물질 개선목표 설정의 적정·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 설치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및 배출량</li> <li>○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전 및 유지 관리계획</li> <li>○ 폐수의 구체적 처리계획(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li> <li>○ 방지시설 설치 전·후의 사용예정 연료 및 사용량</li> <li>○ 방지시설* 도면</li> </ul>	30
다.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 설치의 손익분석</li> <li>○ 방지시설 설치비 조달계획</li> </ul>	15
라. 환경관련 개선 및 투자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청정기술 도입, 방지시설 개선등 실적</li> <li>○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 및 투자</li> </ul>	20
마. 환경관련 법규위반, 민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련 법규위반사항, 민원현황</li> </ul>	10

※ 비고) 1. 환경친화기업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자발적협약 업체에 대하여는 “라”항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점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평가항목별 배점에 등급별 배점계수를 곱하여 채점한다.

### <차등배분에 따른 등급별 배점계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계수	1	0.8	0.6	0.4	0.2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 율 환 경 관 리 협 약 서

업체명 : (대표 : )

주 소 :

위 업체와 정부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약하여 불임과 같이 사업자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등을 정하고 이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청정연료  
등의사용에관한고시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환경  
관리협약을 체결합니다.

불임 : 자율환경관리 협약사항

년 월 일

협약 기업

정 부

업체명 :

환경부장관

대 표 :